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 부정행위 처리 지침

2026. 10. 18.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2조(징계의 사유), 제5조(신고 및 조치)에 따라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 관련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의심 또는 적발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중간·기말고사, 퀴즈, 온라인 시험, 과제물 평가, 실습·실기 평가 등 성적 산출에 반영되는 모든 학업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에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유형) ①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의 시도 및 감독자 지시 위반

가. 시험 중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나.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답안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AI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통신기기의 제출·보관 등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행위

2. 부정행위의 사전준비

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자료, 메모 등을 사전에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나. 시험장 책상, 벽, 신체 등에 답안 또는 관련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둔 경우

다. 제1호 다목의 전자·통신기기를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허용되지 않은 자료·정보·기기 등 부정한 수단의 이용

가. 시험 중 다른 응시자 또는 외부인의 답안이나 시험 관련 정보를 부정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자신의 답안 또는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및 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시험 중 참고·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서적, 노트, 메모 등 자료나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 AI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통신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 관련 정보를 검색·확인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하여 답안을 생성·확인하는 행위

라.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중복 로그인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특수기·통신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대리·공모 등 부정행위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

나. 시험문제 또는 정답을 사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촬영·복제·반출·전송하여 타인에게 제공·유출·유포한 경우

다. 그 밖에 타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과제 등 학업 제출물 관련 부정행위

가. 과제물 등 학업 제출물에서 표절하거나 자료·데이터 등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하여 과제물 등 학업 제출물을 작성·제출하는 행위

다. 과제물을 타인에게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타인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하는 행위, 또는 과제물을 구매·양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 등 학업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부정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가 실제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험 등 학업 평가에서 특정 자료, 기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 등의 사용을 사전에 허용한 경우에는 그 허용 범위 내의 사용은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부정행위 의심 또는 적발 시 조치) ①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시험 감독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된 경우 시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시험 감독자는 부정행위의 판단 및 후속 절차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된 일시 및 장소

2. 학생의 좌석 및 위치

3.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위

4. 관련 자료 또는 전자기기의 종류 및 외형

5. 시험지, 답안지, 부정자료 등 관련 자료

6.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된 학생에게 확인된 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학생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개인 소유 전자기기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동의 없이 기기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잠금 해제를 요구하여 저장정보를 임의로 열람·복제·삭제하지 않도록 한다.

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생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규정)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 징계 규정」 및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2026. 10. 18. 제정)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